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회)	

계엄사령부직제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계엄사령부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핵심 임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권한을 분산함에 따라 계엄사령부 내 합동수사기구에 대한 권한을 공백없이 이행하기 위해 군 수사기관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, 수사 외 정보, 지원 등에서 다양한 기관이 임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 또한, 「국가정보원법」, 「사법경찰직무법(약칭)」, 「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」이 개정·시행되어 국가정보원 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가정보원 직원이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 구성에 대한 근거가 상실되었으나, 정보기관 조정·통제를 위해 군 방첩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 구성에 포함하는 문항을 추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계엄사령부직제」 내 합동수사본부장과 수사단장을 ‘정보수사기관’에 소속된 자로 명시되어 있으나,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따라 ‘군 수사기관’으로 개정 필요

나. 「계엄사령부직제」 내 합동수사본부의 처·실의 장은 ‘정보수사기관’에 소속된 자로 명시되어 있으나, 군 수사기관만으로는 합동수사본부의 처·실의 장을 구성하기 제한되어 다양한 기관에서 함께 임명되도록 범위를

확대해야 하며, 대통령령(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) 개정에 따라
‘군 방첩·수사기관’으로 개정하고 ‘현역장교’에서 ‘현역장교 및 군무원’으로 범위 확대 필요

다. 「국가정보원법」 개정으로 국정원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가 삭제됨에 따라 「계엄사령부직제」 중 합동수사기구 구성원으로 ‘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’에 문구를 삭제하고, 정보기관의 조정·통제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군 방첩기관과 국정원 직원을 합동수사기구에 포함토록 단서 조항 필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계엄사령부직제 일부개정령안

계엄사령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성급 장교중”을 “군 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성급 장교 중”으로, “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”을 “군 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경찰공무원, 국가정보원직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”를 “경찰공무원과”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제5항의 정보기관의 조정·통제업무를 위하여 군 방첩기관과 국가정보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합동수사본부의 처·실의 장은 군 방첩·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 및 군무원 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합동수사기구) ①·② (생략)	제7조(합동수사기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합동수사본부장은 <u>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성급 장교</u>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자를,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국방부장관이 지휘·감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, 대통령이 지휘·감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, 합동수사단장은 <u>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</u>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.	③----- <u>군 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성급 장교</u> 중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군 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</u> 중----- -----.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이외에 계엄사령관·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군사법경찰관리, <u>경찰공무원,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</u> 기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. <단서 신설>	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경찰공무원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<u>단, 제5항의 정보기관의</u>

제8조(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 등) ① (생략) ②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·처·실의 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. ③ ~ ⑤ (생략)	<u>조정·통제업무를 위하여 군 방첩기관과 국가정보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</u> 제8조(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합동수사본부의 처·실의 장은 군 방첩·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 및 군무원 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6575